

라면은행 정관

라면을 매개로 한 나눔 · 열린 한 끼 · 청년창업 · 문화관광 플랫폼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라면은행”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단체는 라면을 매개로 먹거리 나눔과 식사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한편 누구나 부담 없이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며, 라면과 관련한 청년창업·문화·관광·교육·콘텐츠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이 단체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 재난피해자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라면·즉석 식품·식재료·생필품 등을 기부·지원·배분하는 사업
2. 소득·연령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라면을 직접 끓여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열린 라면급식소 또는 “라면샵”의 설치·운영 사업
3. 지역축제·복지현장·재난지역 등을 찾아가는 이동형 라면급식차 및 긴급구호 “라면구조대” 운영 사업
4. 지역 내 협력 식당·편의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한 끼 이용권, 모바일 쿠폰 또는 “라면패스” 사업
5. 개인의 한 봉 기부에 기업·기관이 한 봉을 더하는 매칭 방식의 “라면 1+1 기부” 및 정기 라면후원 캠페인
6. 제조사·유통사·판매점의 정상 유통이 가능한 잉여재고·과잉재고·기부가능 제품을 연계하여 폐기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라면 푸드리스크(Food Rescue)” 사업
7. 라면을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청년의 실전 창업공간으로 운영하고, 예비창업자가 일정 기간 브랜드·메뉴·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사업
8. 청년창업자를 위한 테스트키친, 공유주방, 메뉴개발, 브랜딩, 디자인, 마케팅, 온라인 판매, 경영·세무·법률 멘토링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9. 지역 농·수·축산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대표 라면메뉴·레시피·브랜드 개발 및 로컬상권 활성화 사업
10. 라면을 주제로 한 체험·놀이·전시·공연·먹거리·교육·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라면테마파크”의 기획·건설·운영 사업
11. 라면의 역사·문화·산업·포장·광고·조리도구·레시피 등을 수집·보존·전시하는 라면박물관·라면아카이브·체험관 운영 사업
12. 라면축제, 라면콘서트, 라면엑스포, 라면마켓, 야시장, 박람회, 경연대회, 문화행사 등의 기획·제작·운영 사업
13. 국내외 라면문화 교류, 세계 라면의 날, 해외 라면페스티벌, 국제 교류행사 및 K-라면 문화 확산 사업

14. 전국 라면맛집·공장·박물관·축제·지역특산물 등을 연결한 라면지도, 라면여권, 스탬프투어 및 라면 관광 코스 개발 사업
15. 라면 관련 영상·방송·웹콘텐츠·출판·정기간행물·SNS·온라인 플랫폼·라이브커머스 등 문화콘텐츠의 기획·제작·배포 사업
16. 라면 레시피 경연, 조리교육, 어린이·청소년 식문화 교육, 세대통합 요리교실 및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사업
17. 대학·연구기관·기업 등과 연계한 건강한 조리법, 영양균형, 나트륨 저감, 대체재료, 친환경 포장 등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캠페인 사업
18. 라면봉지·컵·박스 등 포장재의 분리배출, 회수, 재활용·업사이클링 및 친환경 캠페인 사업
19. 라면샵·급식소·축제·테마파크·물류·콘텐츠 사업 등과 연계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자 등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사업
20. 기업의 ESG·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한 라면기부, 임직원 봉사, 캠페인, 공동브랜딩, 매칭후원 및 공익협력 사업
21. 목적사업의 홍보와 재원조성을 위한 라면 관련 기념품·굿즈·캐릭터·콘텐츠·식음료·체험상품 등의 개발·판매 및 온라인몰·팝업매장 운영 사업
2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복지기관·교육기관·관광기관 등의 위탁사업, 보조사업, 협력사업 및 공모사업
23. 국내의 공익단체·푸드뱅크·사회복지기관·청년창업기관·문화관광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24.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목적사업 수행과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
25. 기타 이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 1 항제 2 호의 라면급식소 또는 라면샵은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나눔공간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생·안전·질서·재고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기준을 둘 수 있다.

③ 식품의 조리·제공·판매, 시설 설치, 건축, 행사, 수익사업 등 관계 법령상 신고·허가·등록 또는 안전기준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시행한다.

제 4 조 (본점 및 지점) ① 이 단체의 본점(주사무소)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평 3 길 17, B 동 222 호에 둔다.

② 이 단체는 부산광역시 및 전라남도 여수시에 지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국내·외에 지점·지부·사무소·라면샵·사업장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 5 조 (회원 및 후원자의 자격)

①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이 단체는 목적사업을 후원하는 자를 정기후원자·일시후원자·기업후원자·기관후원자·물품후원자 등으로 둘 수 있다. 후원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및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권 등 회원의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이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 8 조 (임원의 구성) 이 단체는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인 이상 10인 이하 및 감사 1인을 둔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제 17 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 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회계 및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및 총회

제 13 조 (이사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4 조 (이사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 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 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15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 조 (총회)

- ①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 회 회계연도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3 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일 7 일 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 19 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며,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 20 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과 각 부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 21 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사회복지·식품·외식·창업·문화·관광·건축·안전·마케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7 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제 22 조 (소집) 자문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 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결의)

-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채택한다.
 1.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분기별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 ② 자문위원회가 채택한 의견은 이사회가 사업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4 조 (회의록) 자문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자문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사무실에 비치한다.

제 5 장 회계 및 재정

제 25 조 (재산의 구분)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6 조 (후원사업 및 수입금)

- ①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정기후원금, 일시후원금, 지정후원금, 기업·기관후원금, 라면·식품·생필품 등 현물기부,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수입, 보조금·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이 단체는 개인·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후원, 일시후원, 지정후원, 물품후원, 캠페인 후원, 매칭후원 및 그 밖의 적법한 후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이 단체는 후원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후원금 전용계좌 및 CMS 이용을 위한 수납계좌를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CMS(자동이체), 계좌이체, 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 적법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라면·식품 등 현물후원품은 품목·수량·입고일·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배분내역 등을 확인·관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배분이 부적절한 물품은 관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⑤ 후원금·기부금품은 후원 목적 또는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별도의 회계장부와 증빙자료를 통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 ⑥ 이 단체는 후원금·기부물품의 모집·사용·배분내역과 사업실적을 관계 법령,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후원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 ⑦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전용계좌의 운영,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등은 관계 법령상 등록·지정 또는 요건이 필요한 경우 그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시행한다.

제 27 조 (출자 및 용자) 이 단체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총회의 의결로 외부단체로부터 출자 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다.

제 28 조 (회계연도 및 보고)

-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검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보칙

제 29 조 (정관변경)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 (해산 및 합병)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귀속하거나 기부한다.

제 32 조 (운영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라면은행 정관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한다.

2026 년 9 월 1 일

비영리민간단체 라면은행 대표자 : 김 종 문 (인)